

날짜: 주제: 2024년 9월 9일

발신: **다우니 시 차별 금지 정책 공고**

ROGER BRADLEY, 시행정 담당관

다우니 시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민족, 젠더, 성적 지향, 종교적 신념, 시민권 여부, 병역 또는 퇴역 여부, 성별/임신, 나이, 건강 상태, 유전 정보 또는 법으로 보호받는 기타 다른 계층에 대한 인식 또는 이들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 시는 미국 민권법 제 6조를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42 U.S.C. 2000d)

당 시는 1990년의 미국 장애인법(이하 'ADA') 제2조, 1973년의 재활법 제 504조(이하 '제 504조') 및 1975년의 연령 차별 금지법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특히, 다우니 시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입회, 이용 또는 운영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 시는 채용 및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 시는 장애인이 프로그램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 시는 상기 권한에 따라 차별에 반대 또는 신고하는 행위, 고충의 제기 또는 고충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보복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우니 시의 공청회,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편의가 필요한 경우 시의 ADA/제 504조 및 언어 접근 담당관에게 다음의 정보로 문의하십시오.

City of Downey
ADA/Section 504 and Language Access Coordinator
11111 Bloomfield Avenue
Downey, CA 90241
ADACoordinator@downeyca.org

전화: (562) 299-6619

팩스: (562) 923-6388

캘리포니아 통신중계 서비스 711